

#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589	(1)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590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91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92	(4)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93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94	(6)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95	(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무 위 원 회

#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2013.11.26	2013.11.26	2013.12.04	2013.12.04	강명권 의원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11.26	2013.11.26	2013.12.04	2012.12.04	이호영 의원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12.06	2013.11.26	2013.12.04	2012.12.04	총무과장
(4) 충주시 라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11.26	2013.11.26	2013.12.04	2013.12.04	총무과장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11.26	2013.11.26	2013.12.04	2013.12.04	기획감사과장
(6)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11.26	2013.11.26	2013.12.04	2013.12.04	기획감사과장
(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11.26	2013.11.26	2013.12.04	2013.12.04	주민지원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1)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1) 제안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나. 입양가정 지원 사업을 정함 (안 제4조)
- 다. 지원범위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라.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함(안 제6조)
- 마. 지원신청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7조)
- 바.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도록 함 (안 제9조)
- 사. 조례에 의한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충주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조례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용허가 시 사용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조정 (안 제4조 제2항)
  - 사용신청서 제출 : 사용일로부터 5일전 ⇒ 10일전
  - 변경신청서 제출 : 변경일로부터 3일전 ⇒ 7일전

나. 사용료 반액감면 대상 추가(안 제10조 제2호 나목)

-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관련단체가 사용할 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가금면(可金面)은 가흥면(可興面)+금천면(金遷面)으로 면(面)명칭의 역사적·지역적 대표성 결여
- 탄금호를 사이에 두고 좌측은 가금면, 우측은 금가면으로 시민을 물론 외지인들에게 혼동을 유발
- 또한 가금면은 가금(家禽 : 알이나 고기를 먹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연상시킴
- 기업도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준공 및 충주에코폴리스, 탄금호 수변 레포츠타운 조성과 가금~칠금간/북충주IC~가금간 지방도 확포장 등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현황에 걸맞는 신명칭으로 개명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충주시 가금면(可金面)을 중앙탑면(中央塔面)으로 변경

### **(4)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일부 오기(誤記)사항에 대한 정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인구수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 조정

- 대소원면 당저마을 : 2개반⇒3개반 / 1개반 증

나. 첨단산업로 개통 및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미편입된 산업용지 등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 편입

다. 이장정원 및 관할구역 오기사항 정정

-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이장정원 : 2명 ⇒ 4명
- 충주시 금가면 기곡, 마사마을 법정리 : 도촌리 ⇒ 사암리

##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충주시의 비전과 혁신적 창의 행정 구현 및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
- 부서나 담당업무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거나 미래 지향적인  
명칭으로 변경

### 2) 주요내용

가. 부서 신설, 명칭 변경

- 신설 : 창조정책담당관, 조정경기장관리소
- 명칭 변경

- 주민지원과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노인장애인과
- 생활환경과 ⇒ 자원순환과, · 하수처리과 ⇒ 하수자원화과

나. 분담업무의 조정

- 혁신 분권, 시 조직 : 안전행정국 ⇒ 창조정책담당관
- 자원봉사 : 문화복지국 ⇒ 안전행정국

다. 법령 개정에 따른 직책 변경 :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장

## (6)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충주시의 비전과 혁신적 창의행정 구현, 국제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한 부서의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책정기준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함.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방침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

###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방침 변경(전문경력관 → 일반직 정원에 포함)
- 총 정원 : 1,293명 → 1,294명(+1)
  - 집행기관 : 1,274명 → 1,275명
    - 3급~9급 : 1,227명 → 1,227명(사회복지+1, 기능직 △1)  
☞ 사회복지직 순증, 공로연수에 따른 자연감소정원 대체(사진촬영)
    - 전문경력관 : 3명 → 4명(+1)
    - 기타 : 44명
  - 의회사무국 : 19명
-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 일반직 : 1,249명(+1)
    - 3~4급 : 8명/ 5급 : 65명(+2)/ 6급 이하 : 1,172명(△2)
    - 전문경력관 : 4명(+1)
  - 기타 : 45명

## (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개정 법률 제11006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충주시 의사상자 예우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원,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감면(안 제3조)

-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 전액
- 충주시 자연휴양림 : 20%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국내입양 촉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과 입양축하금에 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입양축하금은 입양 첫 해, 6월 이내 신고자에 한해 1회 지원하며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입양축하금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27개 기초단체를 살펴본 바 대부분 기초단체가 일반아동에 대해 1명당 1백만원, 장애아동에 대해 1명당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우리시의 신규 입양아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은 4명, 2011년에는 6명, 2012년도는 2명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2명으로 파악되어 입양장려금 지급대상이 극히 소수로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입양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시 사용신청서와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조정은 제출기간을 앞당긴 것으로 최소로 인한 사용료의 반환 규정인 제11조와 체계가 적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일치시키고 최소나 변경 시 기간의 촉박함으로 인한 당초 사용일에 문화시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여 문화시설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관련 단체가 문화시설 사용시 사용료를 반액 감면한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해 면의 명칭을 가급면

에서 중앙탑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는 면의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 업무지침에 의하면 당해지역 내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3분의2 이상이 찬성이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 주민의견 전수조사 결과 당해지역 1,192세대 중 816세대(참여율 68.5%)가 참여하여 718세대(찬성율 87.9%)가 찬성하여 변경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동안 국내 지자체 사이에 존재해 왔던 이른바 “한반도 정중앙” 논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대소원면의 완오리, 본리, 영평리에 첨단산업단지 및 기업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고 인구와 세대수가 증가되어 지번을 정정하고 반을 증설하는 등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금가면 문산리 이장 정원의 변경과 금가면 기곡, 마사마을의 법정리를 도촌리에서 사암리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한 단순한 정정으로 당연한 조치라 판단됨.

##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직개편안은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창조정책담당관, 조정경기장관리소를 신설하고 부서의 특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지향적인 부서 명칭 사용을 위해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됨.
- 기구조정의 심사과정에서 국이나 과의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는지, 과의 업무 및 명칭은 적합한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6)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방침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총 정원은 행안부의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고 시정홍보 사진촬영 업무 담당자(기능직)의 공로 연수에 따른 자연 감소분을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대체하여 총1명이 증원된 1,294명이 되었음.
- 또한,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창조정책담당관과 조정경기장관리소의 신설되어 5급의 정원을 2명 증원하면서 6급 이하 정원을 2명 감소시키고 전문경력관은 1명을 증원하였음.
- 6급 이하 정원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8급과 9급의 정원을 줄이고 6급과 7급의 정원을 증원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액인건비 기준과 정원채정기준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원과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조례에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4. 질의·답변 요지**

#### **(1)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질의 : 타 자치단체에도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 답변 :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27군데, 광역자치단체는 9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음.
- ▶질의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 답변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거주하고 6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 지원기준은 형평성에 맞는가?
- 답변 : 전국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신청일이 지난 후에도 비워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가?
- 답변 : 중간에 비워있을 경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예산의 소요 내역은 무엇인가?
- 답변 : 청사간판, 홍보비 등 임

## (4)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리·통·반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답변 : 수요가 발생하면 수시로 하고 있음

##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과명칭 변경은 어떻게 추진하는가?
- 답변 : 해당부서의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변경하는 것임.
- ▶질의 : 조정경기장관리소의 소장 직급과 직원은 몇 명인가?
- 답변 : 소장은 5급이며 소장을 포함해서 6명임.
- ▶질의 : 창조정책담당관의 사무분장과 직급은?
- 답변 : 담당관의 직급은 5급이며 새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정부3.0, 지역생활권업무와 조직업무, 평가업무 등을 담당하게 됨.

## (6)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으로 사무관 1명을 더 늘릴 수는 없는가?
- 답변 :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우리시에 의사상자가 몇 가구가 있는가?
- 답변 : 의상자 2가구, 의사자 3가구가 있음

## 5. 심사결과

- (1)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2)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4) 충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5)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6)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7)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